

세계 각국의 AI 방역대책



김 준 걸
농림부 기축방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AI) 특별방역 대책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03년 말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5년 말부터 2006년 사이에 갑자기 서쪽인 유럽과 아프리카 쪽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2005년 중반에 시베리아 지역의 철새에서 AI가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염된 이들 철새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확산시키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어쨌든 현재까지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에서 AI 발생이 확인된 국가가 총 50개국이고 야생 조류에서만 발생이 확인된 국가도 10여개국에 이른다. 이들 국가중에서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곳도 있으나 AI는 발생지역이나 발생 가능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현재 실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베트남·이집트 등 동남아와 아프리카 12개 국가에서는 인체감염에 의한

피해도 발생해 2007년 10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감염자가 330명을 넘어서고 이 중에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이어 지난해에 AI가 다시 유입되어 익산·김제·아산·천안·안성의 7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사육하는 28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살처분보상금을 포함해 총 582억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농림부는 겨울철 북방에서 날아오는 철새가 주요한 유입원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동절기(11~2월)에 이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방역 경험을 토대로 방역실시요령 등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금년에 AI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농림부는 금년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의 기본방향을 양계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에 맞추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해 양계농가 소독설비를 일제히 점검하고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것이다.

농림부의 특별방역대책 내용 중 가장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AI 주요 유입경로에 대한 예찰에 관한 부분이다. 철새·틔새 등 야생조류와 오리(임상증상 없이 잠복감염하여 피해를 야기)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AI 유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철새 분변검사 : 주요 철새도래지 41개소에 서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3,280점)
- 틔새 분변검사 : 철새도래지 및 인근 소하천과 도시 공원지역의 틔새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1,640점)
- 민통선지역 틔새 분변검사 : 북한과 인접한 파주·철원·고성의 민통선 지역의 틔새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300점)
- 야생조류 포획검사 : 야생조류를 직접 포획하여 감염 여부를 검사(200점)
- 야생고양이·쥐 폐사체 검사 : 과거 발생지역 주변의 야생동물에 대한 검사(100점)
- 오리 혈청검사 : 잠복감염 가능성이 있는 오리에 대한 검사(전국 900농가 20,000건)

또한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특별관리로서 과거 발생지역(14개소)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 농가 1일 1회 임상관찰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3일 간격으로 직접 전 농가 전화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잠복감염으로 인해 피해 파급효과가 가장 큰 종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사료섭취량이나 산란율 감소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

히 산란율을 일일 점검토록 하고, 오리병아리 거래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존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AI가 철새뿐만 아니라 닭고기 등 축산물이나 애완조류 등을 통해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 가금육에 대한 AI 오염 여부 검사 및 해양경찰청·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앵무새 등 애완조류 밀수 단속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앞서

농림부는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파 요인으로 지목된 철새에 대한 예찰과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종오리 농장에 대한 거래기록 관리 및 국경검역 강화 등 앞서 언급한 나름의 대책을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는 양계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 노력이 전제될 때에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양계농가는 아래의 차단방역 수칙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1)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AI가 철새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정하면, 가장 상식적인 대책은 우리가 기르는 가금이 철새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AI 방역대책

2003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의 유입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먹이를 찾아 양계장 인근까지 접근한 감염된 철새가 먹이 다듬 과정에서 인근의 까치 등 텃새를 감염시키고, 감염된 텃새가 다시 양계장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계장 관리자는 철새든 텃새든 야생조류와 가금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모든 동원 가능한 차단책을 능가 스스로 강구해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는 농가에서 봄철에 오리를 눈에 풀어 놓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눈에서 뺀 뒤 도축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냇가에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양계장 주변에 이런 농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을 경우에는 도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축사내에서 사육토록 농가들 스스로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야 한다. 방역기관에서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예찰에 나설 계획이다.

2)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해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

야생조류가 가금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야생조류가 양계장에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사 주변에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하고, 특히 사료차량이 사료빈에 사료를 주입할 때 사료가 주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료 공급후에는 반드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외출 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는 무창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계장에서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창계사는 잘 알다시피 야생조류가 가금과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AI가 철새에 의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는 있지만 철새도래지와 먼 거리에 있는 양계장에 실제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감염된 철새의 분변에 오염된 차량이나 사람 등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계장에 출입하는 차량 바퀴 등을 철저히 세척·소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때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방역이다.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발도 AI를 전파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축사 출입용 장화를 별도로 구비하고 각 계사마다 발판소독조를 구비해 신발을 갈아신고 신발과 장화 바닥을 소독하는 것을 생활화하자.

4)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

최근에는 철새도래지의 관광행사가 각 지역에

서 많이 기획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기관에서는 이들 철새도래지 관광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신발 소독을 위해 관광객이 한 방향으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로를 만들고, 바닥에 소독용 부직포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모르는 사이에 신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양계농가에서는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이나 야생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습지 등에서의 낚시 등을 삼가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다녀오는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는 AI가 토착화된 국가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양계농가에서는 가급적 이들 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을 할 경우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검역절차를 반드시 따라 줘야 한다.

3. 농가 당부사항

농림부는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양계농가의 소독설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으로 소독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있는 축사면적 300㎡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이나 계사 입구 발판소독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1차는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2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해당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가금을 살처분할 경



우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시가의 40~80%)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경제적 피해를 감수토록 할 계획이다.

양계장 관계자나 수의사 또는 사료·동물약품 관계자 등은 출입하는 양계장에서 AI 임상증상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인근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며(전용전화 1588-4060),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해당 농장 당사자는 제외).

흔히들 AI는 철새가 전파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이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고 한탄도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우선 실천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다. 평상시에 실천해야 할 네 가지의 방역수칙을 깊이 새기고 생활화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